

KWDI 이슈페이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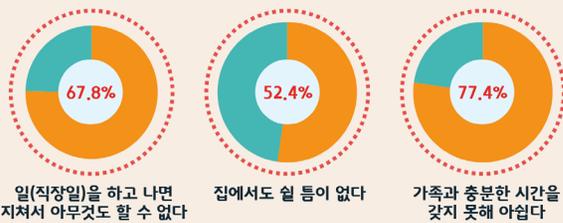
수행과제명 양성평등기본법 시행에 따른 가족정책의 이슈와 과제 **과제책임자** 김소영 연구위원 (Tel:02-3156-7093 / e-mail:sykim@kwidmail.re.kr)

성평등한 일-생활 조화를 위한 노동시간구조 전환과 가족친화 인프라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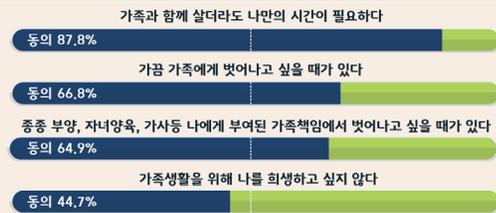
“ 2015년 「양성평등기본법」 시행을 계기로 성차별적 사회구조 개선 및 개인의 존중, 동등한 참여, 권리와 책임 공유를 통한 실질적 평등사회 구현의 가치가 전 사회영역에 재천명되었음. 한편 규범적 가족의식 약화와 선택성 증가 등 한국 가족은 점차 개인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가족구성원 개인의 행복, 삶의 질, 권리보장 등이 가족구성과 유지에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고 있음. 이러한 배경 하에서 전 사회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성평등 가치 실현에 부응해야 하는 동시에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내부 욕구에도 긴밀히 대응하기 위한 가족정책의 추진이 필요함.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족구성원의 동등한 참여와 권리를 저해하는 성차별적 젠더구조 전환과 가족과 개인의 공존 지원을 가족정책의 방향성으로 설정하고, 핵심과제로 근로시간구조 전환과 가족친화 인프라 조성 정책 등을 제안하였음. ”

양성평등기본법 시행에 따른 가족정책의 이슈와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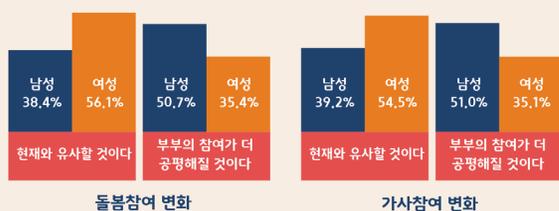
2040세대 취업남녀의 시간부족과 소진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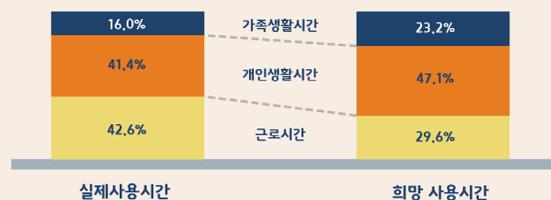
개인-가족생활 조화 관련 인식



근로시간 감소시 부부의 돌봄 및 가사 참여 변화



생활영역별 희망시간 배분



1. 배경 및 문제점

- ④ 2015년 「양성평등기본법」 시행은 젠더불평등을 초래하는 구조 개선, 개인의 존중과 권리 보장, 동등한 참여와 책임 공유를 통한 실질적 평등사회 구현의 가치를 전 사회영역에 재천명하는 계기를 제공하는 데 의의가 있음. 가족규범의 약화와 개인화라는 가족변화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정책 환경 변화는 '가족'이 구성원 개인을 존중하고 권리를 보장받는 장으로 구성될 필요를 다시금 부각시켜 향후 가족정책이 가족구성원(개인)의 권리를 지원하는 정책으로 재설계되어야 함을 보여줌.
- ④ 이러한 정책의 방향성은 「양성평등기본법」의 성평등 참여를 위한 주요 시책의 하나인 일-가정양립 지원 정책이 가족정책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함을 의미함.
- ④ 일-가족 프레임은 일 중심적인 사회에서 개인과 가족 삶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를 제공하였고, 동시에 성별분업을 개선하고자 노력했다는 점에서 성평등 실현과 개인-가족생활의 조화에 기여하는 유효한 전략임.
 - ▶ 그러나 일-가족 프레임은 전형적 가족형태(핵가족)를 전제하고, 자녀양육지원에 초점에 둬으로써 개인들이 생애과정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상황과 관계, 욕구들을 포괄하기에는 매우 협소한 한계를 보임. 이에 최근 연구에서는 일-생활(가족-개인)으로 삶의 영역을 확장한 일-생활 균형이라는 개념이 제안되고 있음.
 - ▶ 그럼에도 이 두 프레임은 주어진 분배조건을 인정하면서 다른 영역과 역할, 주로 가족생활에서 개인이 경험하는 불균형과 갈등에 주목하고, 개인의 적응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돼 온(최은영, 2016:60-61) 한계를 드러냄. 이에 현행 정책은 '여성근로자의 일-가족양립 부담 완화'도, '남성의 가족생활참여 확대'라는 목표에도 기여하지 못한다고 평가받고 있음(송다영, 2012:21).
 - ▶ 이러한 의미에서 향후 가족정책 차원에서 추진되는 일가정양립정책은 일과 가족이라는 이분법적 구조를 벗어나 일-가족-개인 등 다양한 삶의 영역과 양식을 모두 포괄하는 일-생활 조화로 확대되어야 함. 또한 실질적인 일-가족-개인 조화를 가능하게 하는 전략은 기존과 같이 개별적 처방과 조응을 지원하기보다는 생활영역간 불균형과 관계 불평등성을 초래하는 구조적 요인, 특히 노동시간구조 개선을 중심으로 설계되어야 하며, 이를 통한 시간의 확보와 시간 배분의 불평등 해소를 주요 정책 이슈로 부각시킬 필요가 있음.

2. 조사 및 분석결과

④ 수도권 및 광역시에 거주하는 2040세대 남녀 취업자 2,000명을 대상으로 시간사용 현황과 일-생활 조화 욕구를 조사해 일-가족-개인생활 조화방안에 관한 보다 실제적인 함의를 도출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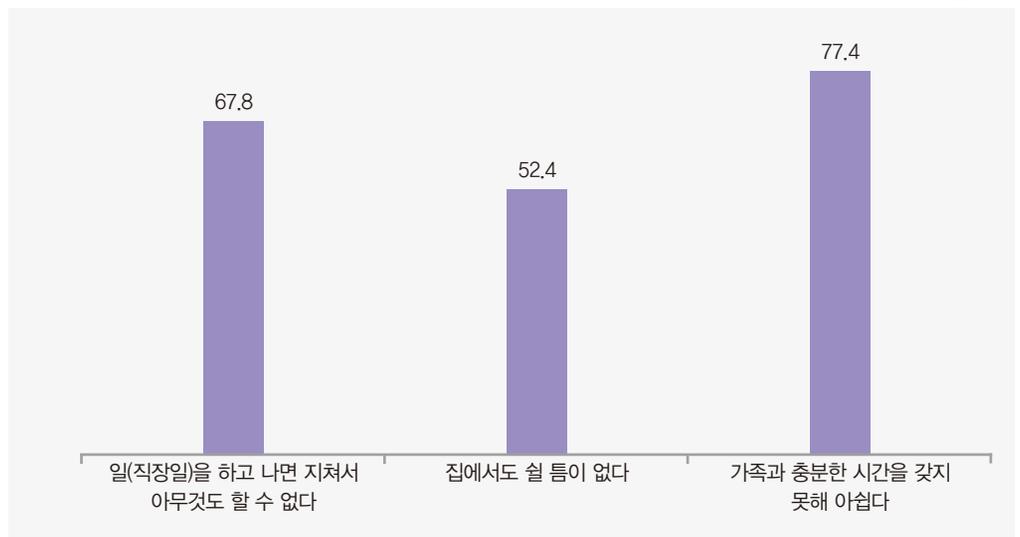
- ▶ 2040세대는 가족관련 의식 및 태도 등에 있어 기존 세대와 뚜렷한 차이를 지닌 가족변화의 추동 집단으로 본 연구에서는 이들의 시간사용 현황과 일-생활 조화 욕구에 보다 주목하였음.
- ▶ 조사는 노동시간 특성 및 평가, 시간 사용 현황 및 희망하는 시간사용, 가족과 개인생활에 대한 의식과 태도, 근로시간 단축 의향과 단축 시 부부간 시간배분구조 등으로 구성하였음.

④ 2040세대들은 노동중심적인 생활세계를 영위하고 있었으며, 긴 노동시간으로 인해 가족 및 개인생활시간의 감소와 일상적인 시간부족, 소진감 등을 경험하였음.

- ▶ 평일기준 하루의 42.6%(8.5시간)를 일과 관련된 활동에 사용하고 있어 노동중심적인 생활세계를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반면 가족생활시간은 평일 기준 222.7분(3.7시간, 하루 16%)이었으며, 개인생활시간의 경우 574.9분(9.5시간, 하루 41.4%)으로 수면(6.6시간)을 제외하면 휴식이나 여가를 위해 사용하는 시간은 2.8시간에 불과함.
- ▶ 긴 노동시간은 생활영역간 불균형뿐만 아니라 개인들의 시간부족과 소진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응답자의 67.8%가 '일(직장일)을 하고 나면 지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52.4%는 '집에서도 쉴 틈이 없다', 77.4%는 '가족과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해 아쉽다'고 응답하였음.

[그림 1] 시간부족과 소진감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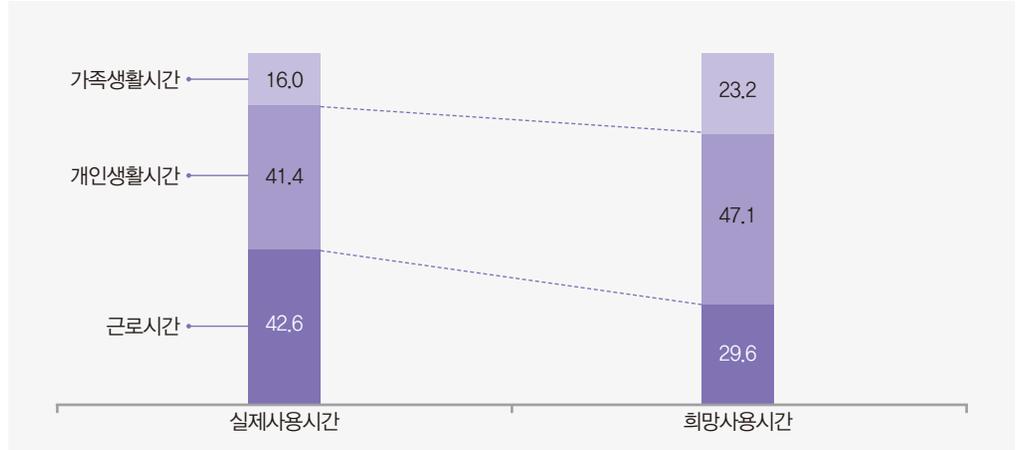


- ▶ 이러한 생활영역간 불균형과 소진감은 다른 생활시간을 줄이거나, 남성은 일, 여성은 가족을 중심으로 다른 생활시간을 감소시키는 성별 불평등한 전략 등 개인적 차원에서 조정되고 있었음.

📍 노동중심적 생활세계와 달리 2040세대들은 노동시간은 줄이고, 개인 및 가족생활에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기를 희망하였으며, 가족보다는 개인생활시간에 대한 욕구가 더 컸음.

[그림 2] 생활영역별 희망시간 배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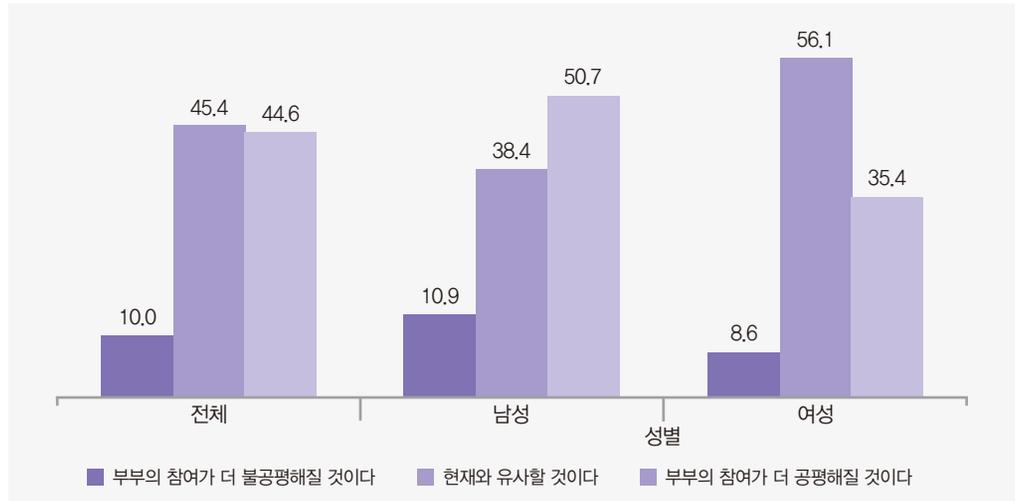
(단위: %)



- ▶ 조사 참여자들은 일보다는 개인생활과 가족생활에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기를 희망하였음. 희망 노동시간은 평일 기준 371.12분(6.2시간)으로 현행 1일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보다 2시간 가량 적은 수준이었음. 조사 참여자들의 주평균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극심한 장시간 근로상황이 아닌 일반적 수준에서도 노동시간 단축 욕구는 상당히 높음을 짐작해 볼 수 있음.
- ▶ 여성과 20대, 무배우자 및 무자녀집단(비혼)을 중심으로 가족 안에서 개인시간의 필요성이나 가족에 대한 부담감, 가족생활을 위해 개인을 희생하고 싶지 않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아 개인과 가족생활의 갈등 가능성도 감지되었음.
- ▶ 희망시간 사용을 위한 방안으로는 '시간 배분에 대한 사회 전체적 노력'과 함께 기 확보된 권리 보장과 노동시간 단축 등 기존 노동시간 구조 개선에 대한 동의정도가 높았음. 전체 응답자의 절반 이상(54.2%)이 노동시간 단축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는데,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 임금감소 우려가 가장 많은 가운데 남성의 경우 사회적 시선, 분위기에 대한 우려가 상대적으로 많았음.
- ▶ 기혼여성의 경우 노동시간이 감소하더라도 가족 내 역할 참여 구조 변화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아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시간의 확보가 남성의 적극적 가족생활 참여와 실질적인 불평등구조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정책적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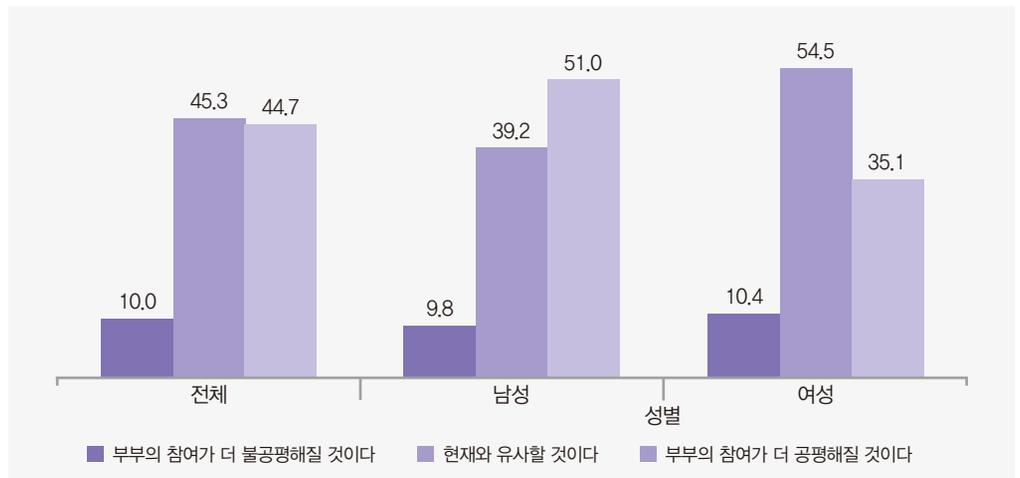
[그림 3] 근로시간이 현재보다 감소할 경우 부부의 돌봄 참여 변화

(단위: %)



[그림 4] 근로시간이 현재보다 감소할 경우 부부의 가사 참여 변화

(단위: %)



3. 정책제언

1) 가족정책의 방향

④ 성평등한 일-생활 조화를 지원하는 가족정책은 다음의 두 가지 방향성을 중심으로 전개될 필요가 있음.

④ 첫째, 향후 가족정책은 구조적 접근, 즉 노동시간 구조개선 등 시간 확보를 위한 정책을 통해 성평등한 일상의 재구성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함.

▶ 일반인조사 결과에서 남성, 무배우자, 무자녀 집단 등 노동시간에 압도된 일상이 광범위하게 목격되었음. 이와 같은 노동 중심적 일상은 남성의 가족생활 참여를 저해하고, 가족(돌봄)시간 확보를 위한 여성들의 노동/개인시간 조정을 불가피하게 함으로써 성불평등한 역할구조를 공고히 하고 있음을 조사결과 재확인함.

- ▶ 따라서 향후 가족정책은 개인 및 가족에게 시간을 돌려줌으로써 자기돌봄과 가족생활 영위가 가능한 일상의 재구성을 지원해야 함. 이는 구체적으로 공고한 노동중심적 시간구조를 전환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며, 이같은 전환을 통해 가족정책은 가족을 구성한 개인에게는 평등한 가족생활 참여를, 다양한 관계 형성의 가능성을 담지하고 있는 비혼자 집단에게는 공동생활과 상호돌봄 활동을 보장할 토대를 마련해줄 것임.

④ 둘째, 노동시간구조 개선을 통한 시간확보로 일-가족-개인생활의 조화를 지원하는 토대를 마련하는 동시에 확보된 시간이 개인과 가족구성원들에게 평등하게 배분되는 방안도 적극 모색되어야 함.

- ▶ 2040세대 조사 결과는 노동시간 단축으로 확보된 시간이 곧바로 가족 내 역할참여 구조의 실질적 변화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을 보여주었음. 가족돌봄과 가사의 역할이 가족구성원 공동의 책임으로 부여되지 않는 한 확보된 시간은 여성들의 가사·돌봄 시간 또는 남성들의 개인시간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음.
- ▶ 따라서 시간의 확보가 실질적인 불평등구조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남성들의 가족생활 참여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적 지원과 남성의 참여 계기를 제공하고 촉진하는 전략들이 함께 고려되어야 함.
- ▶ 가족 내 성불평등 해소와 함께 개인과 가족 간 조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도 요구됨. 조사에 참여한 2040세대 중 여성과 비혼(무배우자 및 무자녀) 집단의 경우 개인시간에 대한 욕구뿐 아니라 가족 안에서 개인시간 확보의 필요성, 가족에 대한 큰 부담감,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싶지 않은 태도 등 개인과 가족생활의 갈등 가능성을 보여주었음.
- ▶ 이러한 결과는 그동안 남성과 유배우자 및 유자녀 집단에 국한되어 온 시간 부족의 문제를 보다 보편적 문제로 확장할 필요를 제기함.

2) 가족정책의 과제 정책과제1. 성평등한 일상 재구성을 위한 노동시간구조 전환

세부과제 1) 노동시간 감축을 위한 제도 개선

④ 성평등한 일-생활 조화를 실현하는 일상의 재구성을 위해 노동시간구조 전환은 가장 핵심적인 과제임. 그러나 사회보장체계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은 현실을 고려할 때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경제·노동지위의 하락은 개인과 가족의 삶의 질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높으므로 노동시간 단축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따라서 노동시간 감축의 원칙을 보편적 적용이 가능한 '임금손실 없는 노동시간 단축제 도입'으로 정하되, 개인의 시간 자율권을 점차 향상시킨다는 측면에서 '개인의 선택권을 강화하는 노동시간 유연성 확보' 과제도 추가 제안함.

- ▶ 임금손실 없는 노동시간 단축제 도입: 주 4.5일제 도입.
- ▶ 개인의 선택권을 강화하는 노동시간 유연성 확보: '전환형 시간선택제' 등.

세부과제 2) 제도 확대 및 강화를 통한 노동문화 개선

④ 노동시간구조 전환을 위해 경직된 조직문화와 장시간 노동에 대한 인식 개선도 필수 과제임. 노동문화 개선은 캠페인과 홍보 등 현재의 소극적 수준에 머물 경우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장시간 근로 등 노동시간 문화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 낼 제도 이행 강화·정책 내실화 방안을 중심으로 관련 과제를 제안함.

- ▶ 정시퇴근을 위한 관련 제도 강화: 법정 노동시간 준수 관련 감독 강화와 관련 제도 확대
 - 법정 노동시간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가족사랑의 날’ 운영의 내실화
- ▶ 실질적 ‘정시퇴근’을 위한 제도 도입 검토
 - ‘최소휴식 보장제’, ‘연결되지 않을 권리(right to disconnect)’ 보장 등과 관련한 사회적 공감대 확대와 제도 도입 검토

정책과제 2. 불평등 해소를 위한 가족친화 인프라와 문화 조성

세부과제 1) 남성의 가족참여 권리 보장 및 참여 촉진 지원 확대

④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와 유급 부성휴가 신설을 통한 가족참여 권리보장

- ▶ 남성의 가족생활 참여를 적극적 ‘권리’로 전환하기 위해 유자녀 남성근로자를 대상으로 최소 1개월에서 3개월(현행 아빠의 달 적용 기간)동안 의무적 사용이 가능하도록 휴가 부여
- ▶ 가족의 필요와 요구에 상시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유급 ‘부성휴가’의 신설 적극 검토

④ 공유 공간의 재구성 및 활용을 통한 남성 가족생활 참여 촉진

- ▶ 2040세대 조사결과 남성들은 가족생활 참여와 개인시간에 대한 욕구를 동시에 지니고 있음. 또한 시간이 주어진다면 가족생활에 적극 참여할 의향도 있으나 익숙하지 않은 가족생활 참여를 기피할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었음. 따라서 확보된 시간에 남성들의 가족생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기존 시설의 재구성 및 활용을 통해 이들의 복합적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가족생활 참여를 지원하는 다양한 공유 공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 또한 돌봄에 비해 성별분업구도가 뚜렷한 가사분담에 남성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공동부엌’과 같은 공유 공간 설치 및 운영도 고려해볼 수 있음.

세부과제 2) 개인시간을 보장하는 제도 및 공공인프라 확충

④ 평등한 일-가족-개인생활의 조화를 위해서는 가족과 분리된 시간과 개인생활을 필요로 하는 개인 및 가족구성원에게 개인시간을 보장하는 제도와 공공인프라 확충도 필요함. 2040세대 조사결과 개인생활에 대한 욕구가 두드러졌던 비혼자 집단과 유자녀 기혼여성을 중심으로 관련 제도 및 공공인프라 설치 확대를 다음과 같이 제안함.

- ▶ 자기돌봄을 위한 유급 휴가제도 신설
 - 2040세대 조사 결과 일-가족 이동부담이 과중한 유자녀 기혼여성뿐 아니라 비혼(무배우자 및 무자녀) 집단도 일로 인한 소진감을 크게 호소하는 등 시간압박과 소진감이 광범위한 수준에서 확인된 만큼 개인의 휴식이나 여가 등을 위해 시간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유급 자기돌봄휴가)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 집중육아기 여성의 휴식(respite) 지원을 위한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 2040세대 조사결과 유배우자 및 유자녀 여성, 특히 영유아를 둔 여성에게는 노동-가족-개인생활의 갈등이 집중되는 시기에 돌봄의 책무로부터 벗어나 휴식 등 자신을 위한 시간의 필요성이 재확인된 만큼 이를 지원하는 공공인프라 확충이 요구됨.
 - 관련해 현재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서비스의 지원과 연동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서비스 지원이 가능한 양육공백 가정 기준에 '집중육아기(만 0-5세) 기혼여성의 휴식(respite care)' 사유를 추가하는 방안이 검토 가능함.
- ▶ 따로 또 같이 '인앤아웃(in-and-out) 하우스' 설치
 - 현재의 가구구성 및 가족변화 양상들을 고려해볼 때 향후에도 가족 및 공동체 내 개인화 경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그럼에도 가족 내에서 개인을 위한 시공간을 창출할 자원은 매우 미흡한 실정으므로 일시적으로 가족에게서 벗어나 개인시간을 확보, 개인적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공간을 설치,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세부과제 3) 개인-가족의 공존을 위한 일상적 가족평등(인권)교육

- ④ 기존 문화조성 및 개선 방안들은 공통적으로 '일시적'이고 '분절적'이며, '문제중심적'인 특징이 있음. 그러나 다양한 타인과의 관계 맺음과 공존을 지원하는 가족평등교육은 일시적(단발적)으로 가능하지 않으며, 어떤 개인에게도 보편적으로 스며들 수 있도록 기획되고 운영되어야 함.
- ④ 이에 가족평등교육을 보편적(필수) 이수 과정으로 공교육 체계에 포함시키는 한편, 상황이나 필요에 따라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 기존의 성인지 관련 교육, 성인권 교육 및 가족/부모교육과 연계하는 방안을 제안함. 이때 가족평등교육의 내용은 나와 타인의 권리, 불평등의 문제, 관계맺음과 공존 원칙 등을 중심으로 각 학교급에 따라 실천방안들을 함께 논의하고 체험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구성함.

4. 기대효과

- ④ 성평등 관점과 가족변화 관점의 유기적 결합을 통한 성평등한 가족정책의 방향성 및 전략 도출
- ④ 성평등한 가족관점에서 현행 일-가족 양립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정책 과제 개발, 노동시장구조 전환 등의 과제 제안을 통한 가족정책의 범위 확장

주관부처: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 여성정책과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여성고용정책과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관계부처: 국무총리실, 보건복지부